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797호 2021. 3. 31(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 제2021-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및 거창군관리계획(가지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2
- 제2021-59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86, 28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 9
- 제2021-60호 도로명주소 고시 ..... 12

## 공 고

- 제2021-506호 무인교통감시장치(구간단속)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14
-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35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

<b>회 램</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및  
거창군관리계획(가지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주택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거 창 군 수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가지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

(1) 지정

가. 상 호 : 주식회사 금호주택

나. 대표자 : 유한성

다. 영업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호(아진캐슬상가)

(2) 변경

가. 상 호 : (주) 무궁화신탁

나. 대표자 : 권준명, 최병길

다.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 P&S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변경)

가.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23-9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기정) 22,630m<sup>2</sup> → 변경) 22,592m<sup>2</sup> 감) 38m<sup>2</sup>

다. 연 면 적 : 기정) 72,825.0908m<sup>2</sup> 변경) 73,417.1737m<sup>2</sup>

라. 규 모 : 아파트 7동(469세대),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실,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집, 주민편의시설

마. 형 별

- 기정) 59A형(전용면적 59.966m<sup>2</sup>), 84A형(전용면적 84.9031m<sup>2</sup>), 84B형(전용면적 84.9710m<sup>2</sup>), 84C형(전용면적 84.9436m<sup>2</sup>), 109A형(전용면적 109.9683m<sup>2</sup>)
- 변경) 66A형(전용면적 66.95m<sup>2</sup>), 84A형(전용면적 84.92m<sup>2</sup>), 84B형(전용면적 84.80m<sup>2</sup>), 84C형(전용면적 84.90m<sup>2</sup>), 109A형(전용면적 109.98m<sup>2</sup>)

4) 의제사항 :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법률 일체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1월 ~ 2023년 7월

## 2.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1)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 붙임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붙임]**

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7	가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거창읍 가지리 1323-9번지 일원	24,342	감)33	24,30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27	가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 변경 기정)24,342m <sup>2</sup> →변경)24,309m <sup>2</sup> 감)33m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분할에 따른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li> </ul>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342	감)33	24,309	100.0	
공동주택용지	22,630	감)38	22,592	92.9	
도로용지	1,712	증)5	1,717	7.1	

②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4,342	감)33	24,309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12	증)5	1,717	7.1	
	제3종일반주거지역	22,630	감)38	22,592	92.9	

※ 지적분할에 따른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76	10	국지도로	168	중로 3-1	가지읍 1325-2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76호선	· 노선신설 (B=10m, L=168m)	• 가지지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도로 신설

④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sup>2</sup> )		
					기정	변경	
I	1	22,630	22,592	거창읍 가지리 1323-9번지 일원	22,630	22,592	공동주택용지
I	2	1,712	1,717	거창읍 가지리 1325-5번지 일원	1,712	1,717	도로용지

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군관리  
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거창읍 가지리 1323-9번지 일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li> <li>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7층 이하</li> </ul>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li> <li>가구의 형상을 감안하여, 각 동의 배치방향이 통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마감 손상으로 미관저해가 없도록 하며, 모든 외벽은 전면에 준하도록 통일되게 처리</li> <li>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함</li> <li>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름</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의 색채는 주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선택하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의 색채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li> </ul>		

⑥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거창읍 가지리 1323-9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로1-76호선 및 대상지 북동면 차량출입 허용구간 설정</li> <li>• 차량출입 허용구간 외 차량출입 불허</li> </ul>	차량출입 허용구간 도면참조

※ 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고시 관련도면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끝.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86, 28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21-43(2021.03.18.)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교통 시설: 소로2-286, 287호선)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가 취소 요청이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취소 고시합니다.

2021. 04. 01.

### 거 창 군 수

1. 취소사업지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38번지 일원
2. 취소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취소사업의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군 계 획 시 설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고제	개명	소로	2	286	346	9.5~11	10,552	고제면 개명리 2026-1번지 ~ 2070번지	거창군고시 제2017-105호 (2017.8.24.)	2021.03.18. ~ 2022.12.31.
						2	287	225	9,841	고제면 개명리 산19-17번지 ~ 2040-1번지		

4. 취소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산림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취소사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6. 취소 대상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소로 2-286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2,152	10,552					
1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4,157	135		국(건설부)			
2	고제면 개명리	2026-4	전	1,741	1,741		거창군			
3	고제면 개명리	산19-34	임	2,034	2,034		거창군			
4	고제면 개명리	2082-2	전	58	58		거창군			
5	고제면 개명리	산19-33	임	887	887		거창군			
6	고제면 개명리	2270	도	3,160	194		국(건설부)			
7	고제면 개명리	2063-3	전	2,000	2,000		거창군			
8	고제면 개명리	산20-11	임	1,362	1,362		거창군			
9	고제면 개명리	2073-4	전	433	338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073-6	전	121	64		거창군			
11	고제면 개명리	2074	전	357	134		거창군			
12	고제면 개명리	산20-13	임	534	534		거창군			
13	고제면 개명리	2072	임	393	195		거창군			
14	고제면 개명리	2268	구	14,344	305		국(농수산부)			
15	고제면 개명리	2046-9	전	72	72		거창군			
16	고제면 개명리	2071	답	261	261		거창군			
17	고제면 개명리	2070	대	238	238		거창군			

○ 소로 2-28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8,443	9,841					
1	고제면 개명리	2038	전	1,050	1,050		거창군			
2	고제면 개명리	2040-1	도	947	352		국(건설부)			
3	고제면 개명리	2039-1	도	7	7		국(건설부)			
4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3,316	2,681		국(건설부)			
5	고제면 개명리	산19-38	임	1,576	1,576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	이*원			
6	고제면 개명리	산19-39	임	73	73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	이*원			
7	고제면 개명리	2037-1	전	131	131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	이*원			
8	고제면 개명리	2037-4	전	339	339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	이*원			
9	고제면 개명리	산19-36	임	2,985	2,985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269	도	512	30		국(건설부)			
11	고제면 개명리	2027	도	1,531	153		국(건설부)			
12	고제면 개명리	산19-17	도	1,487	341		국(건설부)			
13	고제면 개명리	2031-5	임	25	25		거창군			
14	고제면 개명리	2031-6	과	10	10		거창군			
15	고제면 개명리	2030-11	전	29	7		거창군			
16	고제면 개명리	2030-7	도	17	10		국(국토해양부)			
17	고제면 개명리	2030-8	도	251	6		국(국토해양부)			
18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4,157	65		국(건설부)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31.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거함대로 3478-47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2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거함대로 3478-47	20210331	20090702	행정구역명(거창+함양군) 활용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09-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52	20210331	20090401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47-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3길 13	20210331	20090401	관청의 비용을 위한 땅이었다고 하는 옛지명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30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길 134-431	20210331	20090401	마을 뒷산에 옥잔등에 불을 켜서 걸어놓은 설의 명당자리가 있다는 풍수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외등2길 8-1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외등2길 8-10	20210331	20090401	원둔동 마을 바깥에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54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함딧길 65-23	20210331	20090401	함딧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부여

## ●거창군 공고 제2021-506호

### 무인교통감시장치(구간단속)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 방지를 위하여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9일

거창군수

####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 차량 운행속도 저감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 사업명 : 주상면 무인교통감시장치(구간단속) 설치
- 설치규모 : 무인교통감시장치(구간단속 1식)
- 설치위치 : 경남 거창군 주상면 주상삼거리 → 완수대경로당(3.3km)
- 주관부서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2)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 3.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년 3월 29일 ~ 2021년 4월 19일(21일간)

#### 5. 의견제출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기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 E-mail : beom0509@korea.kr

# 무인교통감시장치(구간단속) 설치장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주상면 주상삼거리 → 완수대경로당 무인교통감시장치(구간단속)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35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거창일반산업단지 및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 공공폐수처리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그들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3. 주요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중 유지관리비 50% 지원

4. 예고기간 : 2021. 3. 25.(목) ~ 4. 15.(목)

## 5.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 50126)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거창군 수도사업소)

라. 전화 055-940-8418, 팩스 055-940-8409, 이메일 dudgh8241@korea.kr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담당(☎055-940-8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일자	2021. . .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 1. 제안 이유

거창일반산업단지 및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 공공폐수처리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그들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 확대(안 제7조제2항)

- 1) 지원금: 사용료 산정 시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50 지원
- 2) 지원기간: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가동률 100분의 60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 조례」 제11조
- 2)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나. 예산조치: 연간 135,993천원 지원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조 제목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을 “(사용료 부담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산정시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한 다음 달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u></p>	<p><u>제7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u></p> <p><u>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산정시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u></p>

## 관계 법령

###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3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 1. 17.>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4. 28., 2017. 1. 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조례」 제10조, 제11조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2020.5.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사용료 산정기준(제6조 관련)

### 1. 산정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처리시설 사용료(BS)

$$BS = M \times \left\{ 0.5 \times \frac{BLi}{\sum_{i=1}^n BLi} + 0.5 \times \frac{F(Li)}{\sum_{i=1}^n F(Li)} \right\}$$

가. M: 월간 사용료 = 유지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 1) 유지관리비: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2) 연간 시설개선충당금: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 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_i \times F_i \times R$$

- E<sub>i</sub>: 시설 설치 비용
- F<sub>i</sub>: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률

$$F_i = \frac{2}{1,000} \times \frac{\text{월간 일평균유입량(m}^3\text{/일)}}{\text{시설용량(m}^3\text{/일)}}$$

- R: 물가상승률(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연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나. BL<sub>i</sub>: 배출 사업자의 일평균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

- 1) BL<sub>i</sub> = 유량(m<sup>3</sup>/일) × [BOD+COD+SS+T-N+T-P농도(mg/ℓ)] / 1,000
- 2) 해당 월의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이 유입 승인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입 처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F(L<sub>i</sub>):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F(Li) = a \cdot Qi \times \left( \frac{BODi + CODi}{2} + SSi + T-Ni + T-Pi \right) / 1000$$

- 1) Qi: 배출 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 등의 실제 배출유량
- 2) BODi, CODi, SSi, T-Ni, T-Pi: 개별사업장의 BOD, COD, SS, T-N, T-P 농도
- 3) a: 유량 누진계수

유 량 (m <sup>3</sup> /일)	a
Qi ≤ 200	1.0
200 < Qi ≤ 500	1.1
500 < Qi	1.2

라. 오수·폐수 배출 사업자의 산정된 실제 납부금액이 하수도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1.2배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2) 오수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균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다)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1) 종업원 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2)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균수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 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다만, 배출 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가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배출 허용기준으로 산정한다.
-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 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 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2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군수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월 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 수탁자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2) 오수의 경우

#### 가) 사업장의 오수

- (1)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2) B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3) C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4) SS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5) T-N 30 mg/ℓ (기숙사 40 mg/ℓ)
- (6) T-P 3 mg/ℓ (기숙사 4 mg/ℓ)

[별표 2]

##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제7조 관련)

###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정공식

$$CS = a \times Qi \times Wi$$

가. CS: 월간 사용료

나. a: 누진계수

(오수배출업소 a=1.0, 폐수배출업소 a=1.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업소 a=1.2)

다. Qi: 업소별 월간 배출유량

라. Wi: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지원 가격(원/m<sup>3</sup>)

$$Wi = \frac{\text{연간유지관리비(원)}}{30\text{일} \times 12\text{개월}} \times \frac{1}{\text{월간 일평균유입량(m}^3\text{/일)}}$$

### 2. 시설개선충당금 산정공식

가.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

$$\frac{\text{개별 사업장 시설개선충당금}}{\text{개별 사업장}} = \frac{\text{월간 시설개선충당금}}{\sum Qi \text{ m}^3\text{/일(전체사업장 배출유량)}} \times \frac{Qi \text{ m}^3\text{/일(개별사업장 배출유량)}}{\sum Qi \text{ m}^3\text{/일(전체사업장 배출유량)}}$$

$$\frac{\text{월간 시설 개선충당금}}{\text{시설}} = \frac{\text{재산가액(원)}}{1,000} \times \frac{2}{1,000} \times \frac{\text{월간 일평균유입량(m}^3\text{/일)}}{\text{시설용량(m}^3\text{/일)}}$$

나. 월간 시설개선충당금(E):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사용료 산출기준[별표 1]의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정공식의 시설개선충당금 항목을 적용한다.)

다. 배출유량: 사용료 산정기준[별표 1]의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 방법의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을 적용한다.

### 3.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오수배출업소의 사용료 지원금은 거창군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기준에 따른 요금과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2. 시설개선충당금 산정공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오수·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폐수배출업소기준(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정공식)을 적용한다.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 관련조문 : 원인자(납부자)의 부담 증가에 따른 지원(안 제7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전제
  -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 60%가 될 때까지 유지관리비 50% 지원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1년)	2차년도 (22년)	3차년도 (23년)	4차년도 (24년)	5차년도 (25년)	합계
총 비용		△91	△135	△135	△135	△135	△631
세입	사용료 지원	△91	△135	△135	△135	△135	△631

### 3. 관련 의견

- 거창일반산업단지 및 승강기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영부담완화로 기업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일부 지원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
  - 유지관리비 50%(연간135,993천원) 지원

작성자 : 수도사업소장 장봉기